

# 포상규정(3-3-12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본 대학교 구성원으로 한다.

제3조(포상종류) 포상의 종류는 공로상과 근속상 등으로 구분한다.

제4조(공로상)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

1. 본 대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한 자
2.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
3. 행정능률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창안한 자
4. 각종 대내·외 행사 및 교육훈련 등에서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

제5조(근속상) ① 근속상은 교직원으로서 장기 근속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10년, 20년, 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.

②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 연월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년 5월 16일(개교기념일)까지로 한다.

제6조(포상권자) 포상권자는 법인 이사장 및 본 대학교 총장으로 한다.

제7조(포상대상자의 추천) 포상 후보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.

제8조(포상심의) 포상은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포상시기) 포상은 본 대학교 개교기념일을 정기 포상일로 하고,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(부상) 포상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1조(이중포상 금지)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